

●**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 제2026-27호**

개선권고 재결

2026년 3월 12일 인천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04월 07일

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

**개선권고 재결공고[인천해심 제2026-008호(예인선 동일1호 기관손상사건)]**

사 건 명 : 예인선 동일1호 기관손상사건

피요청자 : 유\*\*(\*\*\*\*. \*. \*\*.\*)

인\*\*\*\* \*\* \*\* \* \*\* \* \*\*, \*\*\*\* \* \*\* \*(\*\* , \*\*\*)

귀하가 2022. 10. 20.경 예인선 동일1호의 주기관 실린더 분해 및 재조립 작업 후 동일1호가 2023. 4. 18. 18:33경 항해 중 주기관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.

이 건 사고는 동일1호 기관장이 귀하의 주기관 작업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으나, 귀하가 해당 주기관 실린더를 분해한 후 조립하는 과정에서 분할핀을 삽입하지 않고 볼록 와셔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등 피스톤 크라운 볼트를 부적절하게 조립함으로써 동일1호가 운항 중 일부 해당 볼트가 점진적으로 풀리게 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

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귀하는 주기관 작업 시 제조사 매뉴얼상 작업 방식을 준수하여 작업하는 등의 개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.

따라서 귀하에게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